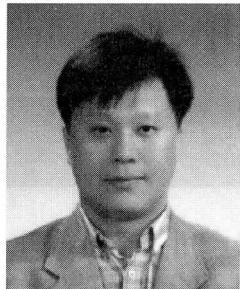




제품(製品) 안전성(安全性)의 관점에서 본 제조물 책임법(制造物責任法)



한국 PL센터
전문위원 박영식

I. 서론

근대의 산업혁명이후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인간의 생활형태는 다양한 제품을 통하여 윤택하고 풍부한 소비사회의 출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소비사회의 다양한 행태는 그에 걸맞는 위험과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그 주권의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행정은 규제로서, 사법은 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상당한 책임을 기업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초기 산업화 시대는 생산의 극대화를 통하여 국가의 富를 축적하려는 고전주의 경제논리에 입각하였으며, 법적 환경은 경제논리를 지지하여 기업의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고도 산업주의 경제상황에서 국가의 정책목표는 복지의 달성을 있으며, 이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소비자 우선정책이 행정과 사법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법적 현상으로는 과실주의에서 무과실주의로의 전환의 확대일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경제적 배경은 접어두더라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우리들 주위에는 과거의 궁핍한 생활에 제공되었던 제품에 의한 피해와 현대의 복잡하고 난해한 제품에 의한 피해는 정도 규모의 면에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그 끝은 어디가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기업의 윤리를 근간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근본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을 기초로 제품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제시로, 지면관계상 전체적인 소개보다 안전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II. 안전에 대한 개념

1. 품질과 안전은 동일개념인가?

최근의 많은 신문이나 매스컴의 광고를 보면 하나의 확연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의 제품 광고는 품질위주의 광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안전성을 포커스로 한 광고가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있다. 이는 안전성을 품질의 일부로 판단한 잘못된 인식의 전환으로 보여지며, 품질은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부의 수단으로 재인식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으로 한 상당수의 기업이 안전성에 대한 결정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법의 관점에서 이 양자를 구분하여 보면 **품질은 제품의 「하자」에 불과하며 「하자」의 의미는 제품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상품성」의 결격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의 위험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품질을 평가할 때는 고장율이 낮다든가 기능의 편리함이라든가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개념은 상당한 가치를 두고 평가한다. 먼저 인간은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에 어느 누구라도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인간이 사용할 제품에 의해 이미 그 피해를

상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 대한 존엄이 상당히 앞서서 인정되고 있는 西歐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제품의 사용자가 정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사용(misuse)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전성을 강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제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규범

앞에서 언급한 안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상태가 인간사회 및 인간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정하면 제품을 사회에 공급하는 기업의 임무는 인간생활의 총체를 유지하고 이를 윤택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제품 공급을 이해한다면 이는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기업은 일종의 안전 제품에 대한 약속이 되며 위험한 제품의 공급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思考에 기초하여 기업의 사회적 규범의 면에서 보면 제품 안전에 대한 수요자의 보편적 요구에 대하여 제품의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위험을 수반한 제품을 이전시키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품의 위험성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로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계약의 자유를 근거로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통제를 포기하는 것은 왜 제품 공급을 하는가를 모호하게 하여 기업의 존립목적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제품에 의해 발생된 위험은 피해의 당사자만이 아닌 적어도 그 당사자가 속한 가족, 그리고 사회라는 집단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수요자의 자유의사에 제품의 위험의 처리를 맡길 수는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규범이 대두되게 된다.

위험제품에 대한 私的 관계를 탈피하여 사회적 관계로 확대할 경우 기업은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는 경제적 요청에 의해 안전한 제품을 공급 할 능력도 없고 그 피해의 발생을 방지할 능력도 없는 기업이 자유경쟁 하에서 타사의 제품에 앞서 시장 선점의 목적으로 위험한 제품을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하나는 비용의 문제로서 산업활성화를 위한 비용과 안전추구를 위한 비용이 동시에 요구되었을 때 기업이 어느 항목을 선택 할 것인가의 문제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전자산권을 동원하여도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제품을 공급 한 기업은 자연히 도태되어야 하는가라는 산업정책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우선 기업의 자주규제에 의한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기업내에서 철저히 내부화시키고 있으며, 안전기준의 정도도 점차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모델로 자기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 하나는 법의 제정을 통하여 일정의 틀을 제공함으로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III.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으로서의

PL 법

1. PL(Product Liability)법이란?

제조물책임법의 法理적 특징은 피해자가 기업의 행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과실책임에서 행위

가 아닌 제품의 위험 요소인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는 「결함」의 사실적 요소만 입증하면 기업이 결함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이론이다. 무과실책임의 법이론 도입의 이론·정책적 배경은 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정보의 불균형, 공급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리스크의 가격분산기능의 적격성, 공급자는 제품의 공급으로 이익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배상은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도입 배경의 주내용이다.

이번에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큰 특징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제품을 「결함」제품으로 정의하고, 결함제품의 공급업자에게 피해의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개념은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맞춘 안전성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각 기업은 자사의 공급제품을 사용할 수요자층을 예상하여 그 수요자층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특정은 제품 사용자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일단 소송에 제기되면 그 결정은 법원의 전결사항이기에 기업은 자체기준이나 업계의 관행보다도 더 넓게 수요자층을 특정하여 제품의 안전성에 만전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특징은 미국의 제3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제1장 제2조의 제품의 결함의 유형을 우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의 정의로서 채택하였다. "제조상의 결함"은 표준일탈기준에 의하며 이의 위반은 무과실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해석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설계상의 결함"의 경우는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조문상으로는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할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대체설계에도 결함이 있을때의 결합판단 기준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없더라도 결함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해결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여 공급되어서는 안 될 제품이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없다고 하여 결함이 부정되는 것은 입법의 취지에 상당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표시상의 결함”은 공급자의 합리적인 경고·지시가 있었다면 사고를 회피 내지는 방지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계울리 한 경우의 책임을 말한다.

합리적인 경고·지시의 시기는 제품의 공급시를 기준으로 하며 공급시의 기술수준으로 피해의 방지가 불가능할 경우는 “과학·기술수준의 항변(제 4조 1항 2호)”을 들어 면책이 가능하지만 이때의 기술수준은 자사(기업)의 기준이 아닌 업계기준의 적용에서 점차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기술에 관한 기업과 업계단체의 노력은 한층 가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PL 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이해득실

PL 법의 시행은 기업에 있어서는 배상책임의 리스크의 증대라고 하는 경영상의 부정적 부담은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윤리의 확보라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이 전향적으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공급자로서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의 구축, 경쟁타사와의 차별화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기업의 존속과 발전에 결정적 요소로서 작용하며 설사 소송으로 발전한다 하여도 법의 명확한 판결을 기초로 기업도 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지침을 설정할 수도 있기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에 관한 효율을 높

이기 위하여 항상 수요자의 소리를 경청하겠다는 태도와 이를 제품에 신속히 반영하는 피드 백의 과정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발상을 갖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IV. 결 론

현재 많은 국가가 PL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해결의 움직임은 국제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제도를 통하여 상당 부분 그 성과를 가치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다국적 내지는 무국적이라 할 수 있는 제품의 국제적 이동은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향후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룰을 제정하자는 일부의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흐름은 21세기를 향한 기업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안전과 환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망각하여서는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업의 자기강화를 암시하기도 한다. 대기업 중심인 우리 기업의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영세성 및 대기업의 사회적 윤리의 문제 등은 수요자의 안전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자위하더라도 이번 PL법 제정은 **수요자의 안전을 기업의 이윤보다 존중하겠다는 의식전환**을 경영자만이 아닌 전사적인 차원에서 회사의 경영 이념으로 선정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 점에서 긍정해야 할 것이다. 이 의식전환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하여야 하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한발 앞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접기로 하겠다. 